

# 감사위원회 트렌드 분석 2019



삼일회계법인

삼일 감사위원회센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114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활동 내역 등을 분석하였다.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였으며,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18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는 총 383명, 2019년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92명, 중도 사임 또는 종임된 사외이사는 96명이다.

본고의 목적은 감사위원회가 회계개혁의 취지와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인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의 관점에서 2018년 감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 5 Key findings



16% vs. 8%

선임 감사위원 중 회계 전문가 비율  
vs. 종임 감사위원 중 회계 전문가 비율



6회

감사위원회 평균 회의 횟수



4회

외부감사인과의 평균 커뮤니케이션 횟수



15%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 중 임원 비율



36%

감사위원 교육 내역이 없는 회사 비율

2018년 한 해는 기업의 재무보고에 있어 과거 어느 몇 년의 기간보다 격변의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부감사법을 비롯한 재무보고 관련 법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이 개정되어 회계개혁이 현실화되었고,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활동이 개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 공시하기로 결정하여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내부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있다. 우리나라는 고질적인 회계 불투명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연이은 대형 회계부정으로 경영진과 외부감사인 만을 향한 정책적 노력에는 한계가 존재함이 드러났고,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게 된 것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감사위원회가 직접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발생시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였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제정·발표하였다.

사실 상법이나 외부감사법 등은 감사위원회의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간략히 정하고 있어 이를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았고, 이는 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친 이유 중 하나였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내부감사기구가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관행을 제시한다. 한편, 사업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통해 감사위원회에 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시되고,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될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최선의 관행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기업은 저마다 적합한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고민하고 개선책을 실행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면 감사위원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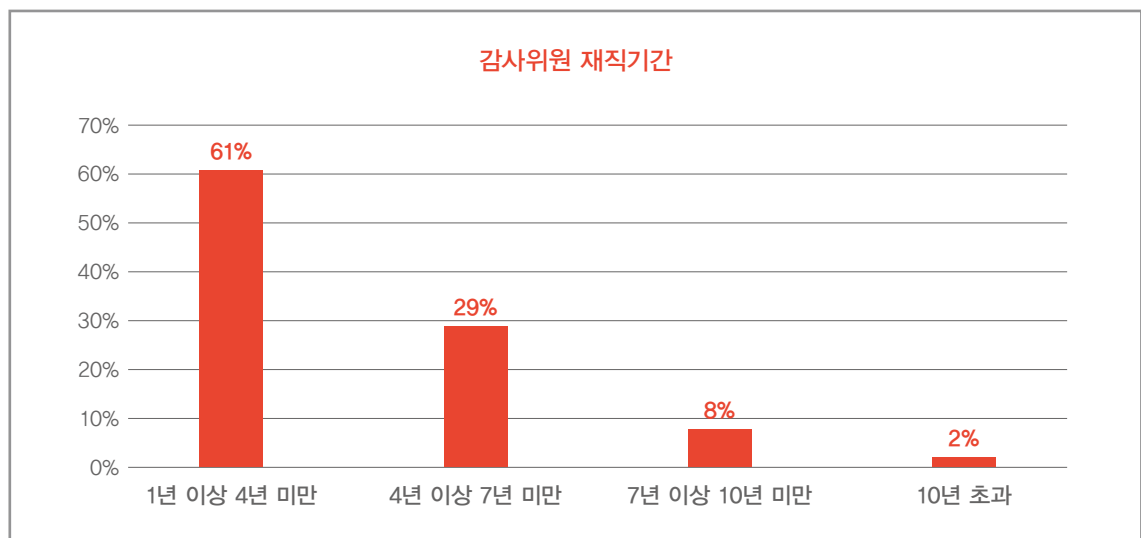




## 1. 독립성

분석 대상 기업 중 공사 3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감사위원회가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었다. 공사의 경우 상임감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3인으로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외 111개사는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3인인 89개사(78%), 4인인 22개사(19%), 5인인 3개사(3%)로 나뉘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할 것을 권고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의 내용을 대부분 충족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사외이사가 경영진이나 지배주주로부터 사실상 독립적인지 여부이다. 상법상 요건<sup>2</sup>을 충족하면 사외이사가 될 수 있지만,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학연, 지연 등의 사회적 관계가 독립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사위원의 재직 기간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 한 사람은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sup>3</sup> 분석 대상 기업에서 2018년 활동한 감사위원(총 383명)은 평균 3년 정도 재직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간별 분포는 다음과 같았다. 가장 많은 감사위원이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 장기간 재직하는 경우도 2%(7명)로 집계되었다.<sup>4</sup>



2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4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 2. 전문성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소 2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최소 1명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둘 것을 요구하는 상법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다. 또한 상법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과거 경력 위주의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모범규준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을 권장한다. 즉, 모범규준은 실질적인 감독 업무 수행 능력에 기반하여 감사위원의 전문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회계·재무 전문성은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의 제고라는 회계개혁의 가장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감사위원회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으로 볼 수 있다.

### (1) 2018 감사위원

지난 주주총회 시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재무 전문가 출신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기도 하였다.<sup>5</sup> 먼저 2018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사외이사 383명의 주요 경력 분포를 보면, 관료 출신이 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회계 또는 재무 전공을 제외한 교수 및 연구원이 22%, 법률전문가가 18% 순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sup>6</sup>

표1. 감사위원 주요 경력 분포 (2018년 활동)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sup>(1)</sup>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sup>(2)</sup>	학계 <sup>(3)</sup>	관료	법률 전문가 <sup>(4)</sup>	기타
인원수 (총 383명)	23	23	10	10	25	30	85	90	68	19
비율	6%	6%	3%	3%	7%	8%	22%	23%	18%	5%
회계·재무 전문가 <sup>(5)</sup> (총 121명)	21	21	8	9	13	5	8	33	2	1
비율	17%	17%	7%	7%	11%	4%	7%	27%	2%	1%

(1) 재무팀장, 재무 관련 임원 포함

(2) CFO 등에 포함되는 경영진 제외

(3) 회계 또는 재무 전공 제외

(4) 판사, 검사 변호사 및 법학 전공 교수

(5)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 제1호 및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회계·재무전문가로 회사가 공시한 감사위원의 경력 분포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각 감사위원이 회계·재무전문가인지 여부와 상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분석 대상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383명의 사외이사 중 회계·재무전문가로 특정된 인원은 모두 121명으로 32% 정도에 해당한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재무학 교수 범주에 속한 감사위원은 대부분 회계·재무전문가로 분류되었으며, 금융기관 출신과 관료의 비중도 높다. 다만, 감사위원회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단순히 상법상 요건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모범규준에 따라 회계기준, 회계감사,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기준으로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5 조선비즈, 재계 "회계·재무 전문가 모셔라"...분식회계 논란 방지, 2019.3.4

6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 기구'에 회계 전문가 존재'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아닌 '회계' 전문가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모범기준 매뉴얼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인 감사위원이 법규에서 정해놓은 자격 및 경력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경험, 지식 및 역량으로 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적용하고 있는 회계원칙에 대한 이해, ② 회사가 수행한 회계추정, 충당금, 적립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회계원칙이 적용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③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또는 감사해 본 경험, ④ 재무보고와 관련된 내부통제에 대한 이해, ⑤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이해를 열거하고 있다.

## (2) 2019년 감사위원 트렌드(신규 감사위원 vs. 종임 감사위원)

감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이 2019년 선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신규 및 종임 감사위원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8년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회계사 및 회계학 전공 교수의 분포를 요약한 표1과 다음의 표2를 비교해 보면, 회계사 및 회계학 전공 교수의 신규 선임 비율은 더 높고 종임 비율은 더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회계 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음을 의미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기업 차원에서도 이루어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2. 선임 및 종임 감사위원 주요 경력 분포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학계	관료	법률 전문가	기타
선임 (총 91명)	6	8	0	2	8	8	17	23	13	6
비율	7%	9%	0%	2%	9%	9%	19%	25%	14%	7%
종임 <sup>(*)</sup> (총 96명)	3	5	0	1	11	8	18	30	17	3
비율	3%	5%	0%	1%	11%	8%	19%	31%	18%	3%

(\*) 임기 만료 및 중도 사임

## (3) 감사위원장의 재무전문성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은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감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회계 또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출 것을 권장한다. 2018년에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외이사의 경력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감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비율과 비교해 볼 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감사위원장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이해력(financial literacy)을 갖추므로써 감사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감사위원회 위원장 주요 경력 분포 (2018년 활동)

	회계사	회계학 교수	CFO 등	재무학 교수	금융기관 출신	경영진	학계	관료	법률 전문가	기타
인원수 <sup>(*)</sup> (총 107명)	17	11	3	7	10	6	11	28	12	2
비율	16%	10%	3%	7%	9%	6%	10%	26%	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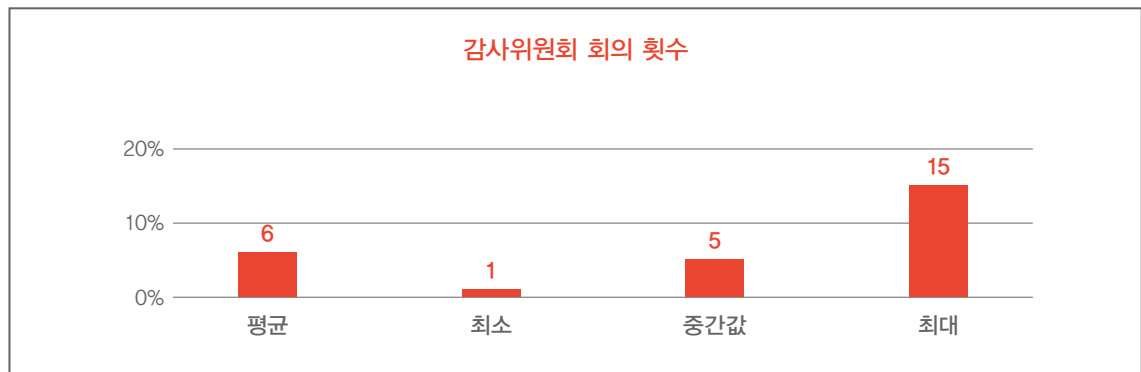
(\*) 감사위원장 여부를 공시하지 않은 회사는 제외하였으며, 2018년에 감사위원장이 교체된 경우 전·후임 감사위원장을 모두 포함함.

### 3. 활동성

#### (1) 감사위원회 회의

회의는 감사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감사위원회 회의 횟수를 대용치로 사용한다. 물론 회의의 사전 준비, 진행 방식, 소요 시간, 회의 참석자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회의 활동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회의 횟수는 감사위원회 활동의 객관적인 측정치로서 의미를 갖는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분기별로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분석 대상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평균 6번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이 1번, 최대값이 15번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참고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보고서를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감사위원 선임 안전에 대해서,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연간 감사위원회를 4회 미만 개최한 경우에 반대투표를 권고하고 있다.<sup>7</sup> 사업보고서에는 감사위원 별 회의 출석률이 공시되는데, 81%의 감사위원이 100%의 출석률을 보였고 75% 미만의 출석률을 보인 감사위원은 1%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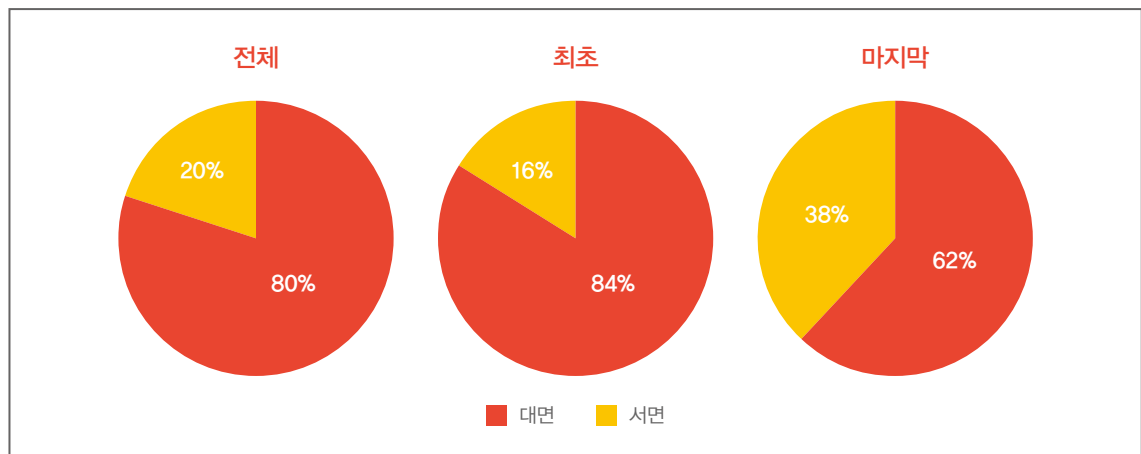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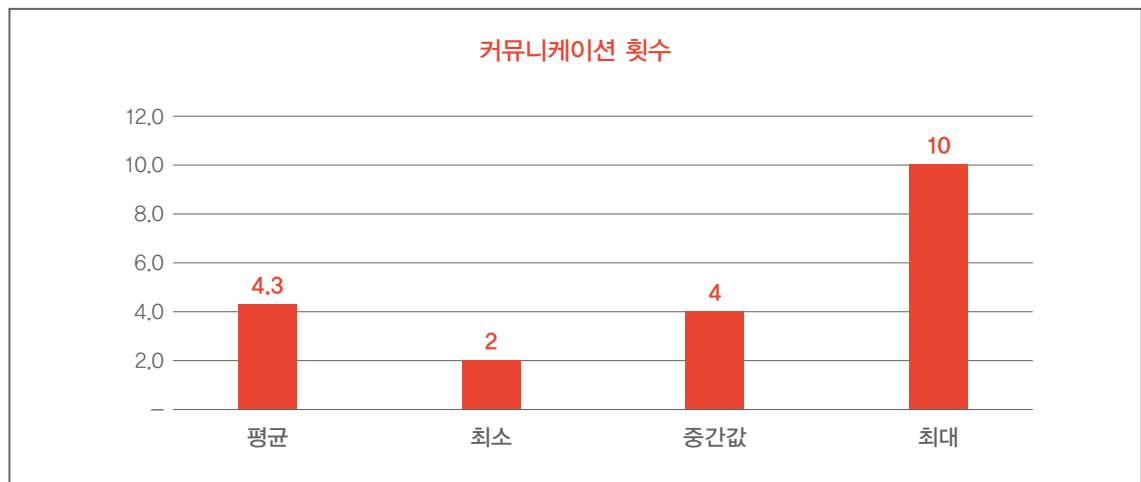


한편,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연평균 14개의 안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의 당 평균 2개 정도의 안전을 다루었다.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에 따르면, 총 안전 중 결의를 필요로 하는 항목의 비중은 43%였다.

7 조선비즈, 재계 "회계·재무 전문가 모셔라"...분식회계 논란 방지, 2019.3.4

## (2)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감사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하고, 최소한 분기에 1회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sup>8</sup> 분석 대상 기업의 감사위원회는 연평균 4.3회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하였으며, 가장 적게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2회, 가장 많이 커뮤니케이션한 감사위원회는 총 10회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감사위원회 구성원과 회계법인의 업무수행이사가 참여하였으며,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참여한 기업은 총 23개였다. 동 23개사 중 8개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재무담당이사(임원) 또는 재무팀이 포함되어, 경영진의 참석 없이 진행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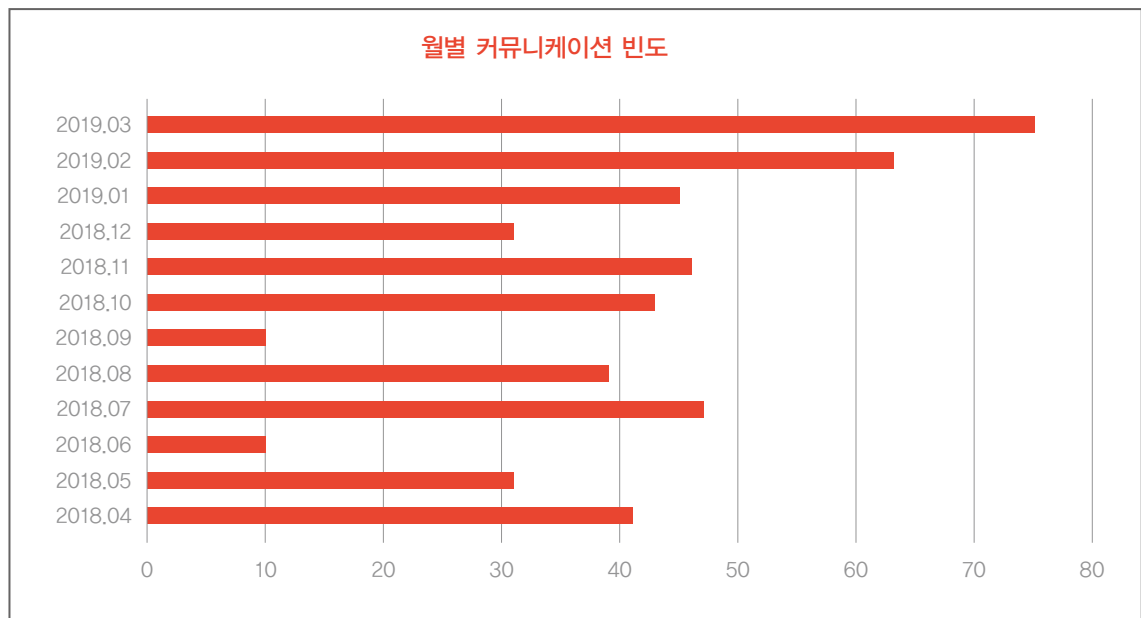


8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 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대면 회의 또는 서면 보고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업의 전체 커뮤니케이션에서 대면회의와 서면 보고의 비율은 8:2로 대면 보고가 많았으며, 최초 커뮤니케이션과 최종 커뮤니케이션의 대면 회의 및 서면 보고 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공시된 바에 따르면 최초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주로 감사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대부분 감사종료 보고가 수행되었다.<sup>9</sup>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대해서는 논의 사항의 중요성과 민감도,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사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회계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인의 독립성과 내부통제의 유의적 미비점은 반드시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서면 보고로 절차를 종료하라는 의미라기 보다, 해당 사항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만큼 논의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문서화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재무보고와 외부감사의 리스크 측면에서 심도있게 이슈를 다루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월별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 빈도를 살펴본 결과, 주로 감사종료 보고가 수행되는 2월과 3월에 가장 빈도가 높았고, 분반기 검토 보고가 수행되는 4월, 7월, 10월에도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았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간 커뮤니케이션 일정 및 형태, 논의 안건 등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한다. 한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계획 단계에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과 세부감사계획에 대하여 협의하고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공시된 정보를 살펴본 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시기와 감사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시기에 수 개월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빈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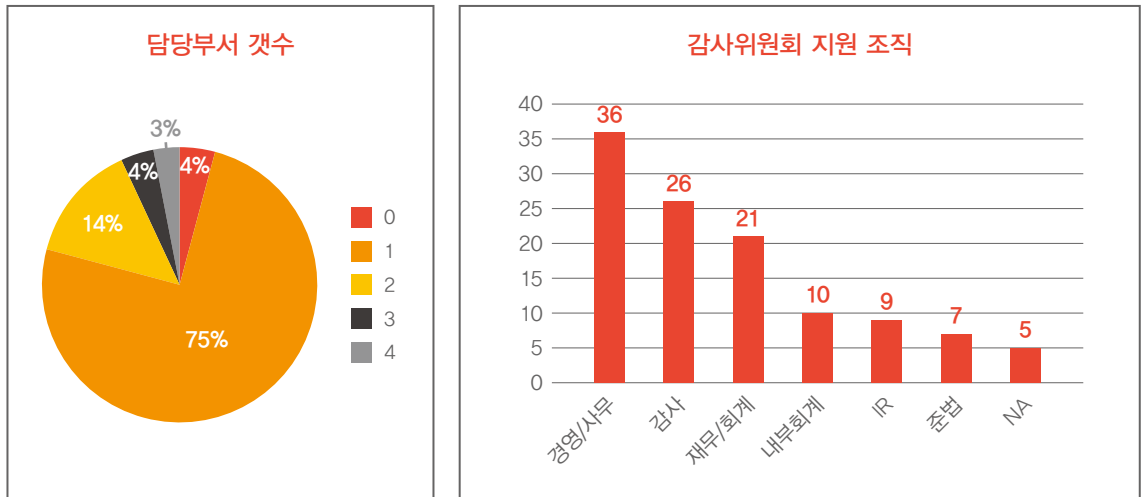
9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공시된 '주요 논의 내용'은 회사마다 기재 방식이 달라 상세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감사계획, 감사진행보고 등 상위 수준으로 기재한 회사가 있는 반면 감사계획에 대해서도 감사일정, 독립성, 핵심감사사항 등 세부적인 수준으로 기재한 회사도 있다.

## 4. 감사위원회 운영

### (1)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

감사위원회 모범기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는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강화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회의체로 운영되며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일상적인 업무감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감독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기업은 모두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에 대해 공시하였는데, 별도의 조직이 없다는 사실만 공시한 2개사와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은 없으나 몇 개의 부서가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위원회를 보조한다고 공시한 3개사는 담당부서 갯수를 '0'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대상 기업의 75%가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1개의 부서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서 명칭은 다양하였다. 경영/사무<sup>10</sup>, 감사, 재무/회계, 내부회계 순으로 지원 조직이 공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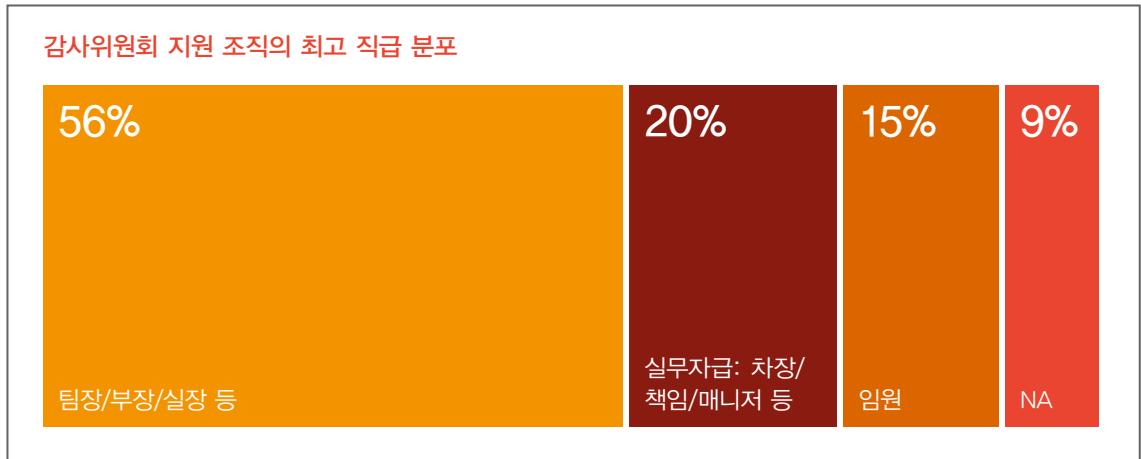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의 재무보고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감독해야 하는데, 그 지원 조직이 재무보고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담당 부서인 경우 지원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정보만으로는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정확히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sup>11</sup>

10 '경영/사무' 조직에는 감사위원회/이사회 사무국, 경영개선/관리/지원/기획/진단팀, 기업문화팀, 윤리경영팀, 전략기획팀, 총무팀, 투명경영팀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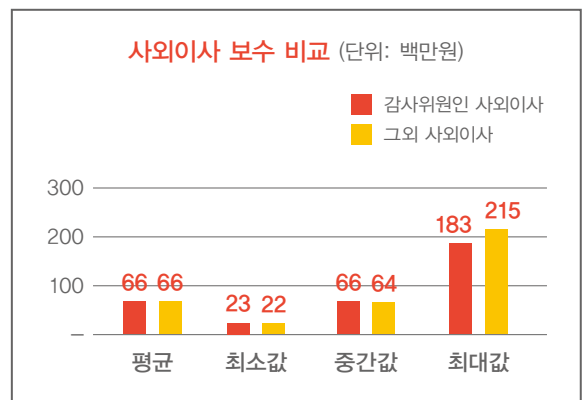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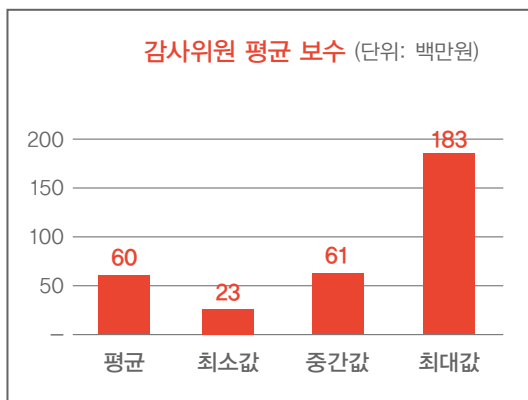
11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또한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구성원의 전문성,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체계, 책임자 직급, 인원, 역할, 조직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한다.

한편,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최고 직급은 팀장/부장/실장이 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임원급은 15%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독립성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를 임원급으로 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회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상시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감독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이슈 발견 시 적시에 보고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적절한 지위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과 평가 권한을 감사위원회가 갖도록 권장한다.



## (2) 감사위원 보수<sup>12</sup>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는 엄중해진 책임으로 연결되어 적절한 감사위원 보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모범규준은 감사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준은 감사위원이 이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에 추가하여 감사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시간, 노력 및 법적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12 평균 보수는 사업보고서내 '임원 등의 보수' 섹션상 기재된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몇몇 회사의 경우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 기간(예를 들어, 9개월)의 보수를 기재한 경우 비교가능성을 위해 연환산 금액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일부 회사의 경우 상법상 사외이사가 아닌 비상근이사의 보수를 사외이사 보수 기재란에 포함한 경우가 있어 이를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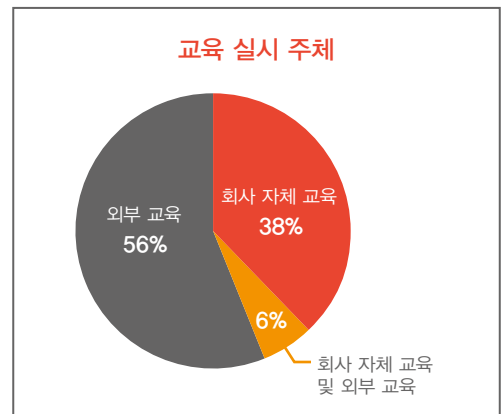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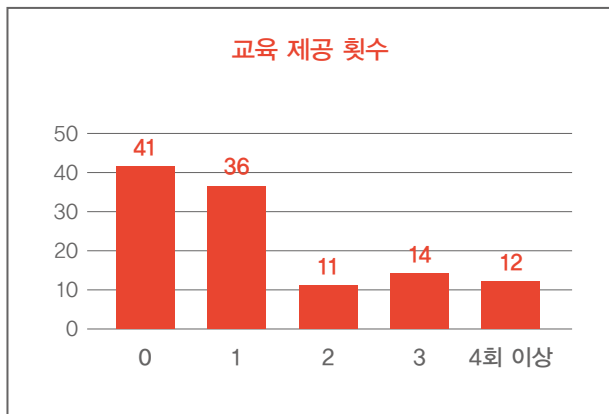
분석 대상 기업의 2018년 감사위원 평균 보수는 60백만원이었으며, 최소값이 23백만원, 최대값이 183백만원으로 나타나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감사위원의 보수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결합되어 지급된다.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 퇴직금, 주식매수선택권, 회의비, 위원장 추가 수당업무추진비, 건강검진 지원, 차량 제공, 사무실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사외이사가 있는 72개사를 대상으로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이 아닌 사외이사의 보수를 비교하였으나, 최대값을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sup>13</sup> 적절한 감사위원 보수는 기업의 규모, 산업 및 사업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감사위원회 활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3) 감사위원 교육 제공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감사위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회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위원은 적절한 입문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실효성 있는 감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현재의 법·규정 및 제·개정 현황, 사업과 산업의 내용 및 변동 사항 등의 주제들이 교육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급변하는 현재 시장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교육·훈련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분석 대상 기업 중 41개사는 전혀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연 1회가 가장 많았고(36개사), 4회 이상 교육을 제공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12개사였다. 교육을 제공하는 주체는 외부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56%에 달했고, 회사 자체 교육만 제공하는 기업이 38%, 그리고 외부 교육과 회사 자체 교육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는 6%를 차지하였다.<sup>14</sup> 교육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기업 및 산업 상 주요 변화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전문가가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규, 회계기준 및 관련 제도 변화가 미치는 영향 등은 외부감사인이나 전문 교육 기관<sup>15</sup>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기업들이 실시한 교육 주제 중에서 감사위원회 역할, 책임 및 운영 실무/개정 외부감사법령/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핵심감사사항 등 개정 감사기준 소개/새로운 회계기준 등의 비중이 높았다.



13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사외이사의 보수가 직무수행의 책임과 위험성, 투입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지 설명하여야 한다.  
14 참고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의무화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내부감사 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표에 포함)  
15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2018년에 설립한 법인이다.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포럼, 세미나 등의 현장 프로그램과 온라인 강좌를 제공한다. 홈페이지(www.acforum.or.kr)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 재무보고 환경 변화의 중심에 감사위원회가 있다.

2018년에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기업들도 이번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으로는 더 이상 법규에서 요구하거나 기업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의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공시를 통해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시된 정보를 통해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외부이해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요컨대 종전의 감사위원회 운영이 법규가 정한 형식적 요건을 준수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재무보고에 대한 감독 책임을 다 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최선의 관행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변화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

### Contacts

**김재윤** 파트너  
센터장, 총괄

02 3781 3423  
jae-yoon.kim@pwc.com

**손정현** 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3781 3284  
jung-hyun.sohn@pwc.com

**하미혜** 연구위원  
센터 상근

02 709 8599  
mihye.ha@pwc.com

[acc.samil.com](http://acc.samil.com)

S/N: 1905A-NL-003

© 2019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